

청약안내 [신혼부부 특별공급]



청약 신청자격 확인

구분	구분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인천, 서울, 경기)에 거주(장기복무군인제외)중 이신가요?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이 있으신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 및 연체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셨나요?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이하(맞벌이의 경우 140% 이하)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나요? 혼인 기간이 7년 이내(재혼 포함) 혹은 예비신혼부부(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) 혹은 한부모 가족(만6세이하 자녀(태아포함))이신가요?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인가요?(단, 기존 주택 처분 후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 이상인 경우는 2순위로 청약 가능)
무주택 세대 요건	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는 분
자산 및 소득 요건	“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” 및 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” 을 충족하시나요? ※ 자산 및 소득 요건의 상세한 사항은 별도 페이지 확인

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

공급유형		구분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 소득 無	100% 이하	6,030,160	7,094,205	7,094,205	7,393,647	7,778,023	8,162,399
	배우자 소득 有	100% 초과 ~ 120% 이하	6,030,161 ~ 7,236,192	7,094,206 ~ 8,513,046	7,094,206 ~ 8,513,046	7,393,648 ~ 8,872,376	7,778,024 ~ 9,333,628	8,162,400 ~ 9,794,879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 소득 無	100% 초과 ~ 130% 이하	6,030,161 ~ 7,839,208	7,094,206 ~ 9,222,467	7,094,206 ~ 9,222,467	7,393,648 ~ 9,611,741	7,778,024 ~ 10,111,430	8,162,400 ~ 10,611,119
	배우자 소득 有	120% 초과 ~ 140% 이하	7,236,193 ~ 8,442,224	8,513,047 ~ 9,931,887	8,513,047 ~ 9,931,887	8,872,377 ~ 10,351,106	9,333,629 ~ 10,889,232	9,797,880 ~ 11,427,359

※ '무주택 세대구성원'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,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'혼인'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)
 ※ 가구원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
 ※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

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

구분	구분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.02.02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에게 우선공급하며,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.)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합니다.
당첨자 선정방법 (※ 경쟁 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	<p>1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, 입양 포함)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※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(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) 포함 ②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<p>2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(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인천광역시) 거주자에게 50%,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 거주자에게 50%를 공급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“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우선공급 대상자(70%)의 경우,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「신혼부부 가점항목」,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, 동일순위, 동일지역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. 일반공급 대상자(30%)의 경우,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'혼인'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,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검증합니다.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,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,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(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) 하나,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 ※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

항목	구분	구분
가	가구 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%) 이하인 경우 : 1점
나	자녀의 수	3명 이상 : 3점 2명 : 2점 1명 : 1점 •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, 태아를 포함
다	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(인천광역시)	3년 이상 :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: 2점 1년 미만 : 1점 • 해당 주택건설지역(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,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. ※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의 행정구역을 말함
라	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	24회 이상 :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: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: 1점 • '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'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
마	혼인 기간 (신혼부부에 한함)	3년 이하 :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: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: 1점 •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
	자녀의 나이 (한부모 가족에 한함)	2세 이하(만3세 미만) : 3점 2세 초과 4세 이하(만5세 미만) : 2점 4세 초과 6세 이하(만7세 미만) : 1점 •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, 태아인 경우 '자녀의 나이'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• 신혼부부·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

※ '가. 가구 소득'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%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%	4,824,128	5,675,364	5,675,364	5,914,918	6,222,418	6,529,919
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%(맞벌이)	6,030,160	7,094,205	7,094,205	7,393,647	7,778,023	8,162,399

※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.

※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.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,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※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(향후 청약하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,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)됩니다.

-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,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'나. 자녀 수' 산정방법

- (일반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(임신/출산/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, 이하 '자녀'라고 함)를 말하며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)를 입력하고,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.
- (재혼 또는 이혼) 신청자 또는 (예비)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, (예비)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(배우자의 직계비속)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.
- (임신)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,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, 서류 미제출·허위임신·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.
- (입양)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,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.

※ '다. 혼인 기간' 관련

-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 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)
 -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,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(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) 하나,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- ※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